

2020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전형

「학칙」 제4장 제35조(학생설계전공), 「학사운영규정」 제6장 제3관(학생설계전공), 「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」

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(전공에 한함)의 최소 이수학점(36학점)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.

I. 전형일정 및 안내

1. 지원자격

1)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장 제3관(학생설계전공)이 정하는 3학기부터 편입생을 포함한 재학생(전공 미배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) 3회 이상 등록, 취득학점 34(36) 이상이어야 함.

※ 합격발표 후에 휴학(학기 중 휴학)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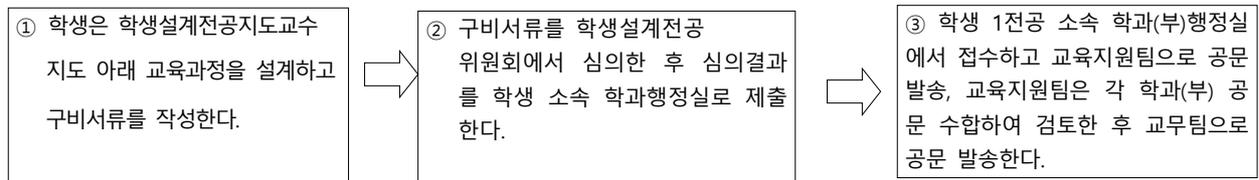
<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: 1학기(3. 2. ~ 7. 31.), 2학기(9. 1. ~ 익년 1. 31.) >

2)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

3)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.

4) 융합, 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. 단,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, 이중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

2. 신청절차



※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(부)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

3. 접수마감

1)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(부) 행정실로 2020. 4. 14.(화) 10:00 ~ 5. 13.(수) 17:00까지 제출 및 신청함.

2) 신청학생의 소속 학과(부) 행정실은 2020. 5. 11.(월)까지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함.

4. 합격발표

2020. 6. 26.(금) 14:00 포탈시스템-학사일정 공지 예정

5. 지원자 유의사항

- 1) '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, 이중전공, 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- 2)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,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.
- 3)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.
- 4)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, 소정의 절차(정규학기등록, 이수학점인정, 이수과목지정, 수강신청 등)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.

Ⅱ. 기본사항 안내

1. 지원자격

- ① 「학칙」 제35조에 의하여 학생설계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(전공 미배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) 소정기간에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※ 합격표발표 후에 휴학(학기 중 휴학)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.
- ②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수 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휴학생은 신청 불가함.
- ④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며, 이수 신청은 지정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에 학생의 소속 학과(부)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한다.
- ⑤ 융합(이중)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도 신청 가능함. 단, 학생설계전공전형에 합격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된 융합(이중)전공은 자동 취소 처리됨.

2. 지원범위 및 설계방법

- ①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(편입생 포함)은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학생설계전공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설계하며(단, 전공 필수과목은 제외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은 제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),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3. 개설의 제한 및 허가 기준

- ① 한 교수가 개설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3개 이내로 한다.
- ② 한 교수가 학생설계전공의 설계지도교수로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학생설계전공의 학생 선발 기준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정하며 교무처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
4. 신청방법

- ① 학생설계전공 신청자는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설계하여 소정의 선발전형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선발전형 세부사항은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및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5. 학점이수

- ①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방법은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학생설계전공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(전공에 한함)의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설계전공자가 학생설계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④ 학생설계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.

6. 이수포기

- ①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기말 1개월 전(1월 20일 또는 7월 20일)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, 제1전공에 관하여는 소정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학생설계전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규정 제56조(졸업의 기본요건)에 의거, 다른 제2전공(또는 심화전공) 중 택일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다른 제2전공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반드시 포기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(학생설계전공은 합격 후 취소 가능), 재신청은 1회에 한 한다. 다만, 학생설계전공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하는 경우 더 이상 학생설계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.
- ④ 학생설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 교과목은 “일반선택” 과목으로 인정한다.

7. 졸업사정 및 시기

- ① 학생설계전공 졸업사정은 설계전공 위원장이 소속한 학과(부) 행정실에서 주관한다.
- ② 학생설계전공자는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졸업시기를 연기한다.

8. 학위수여

학생설계전공자가 제1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각 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.

9. 증명서

학생설계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.

- ① 재학증명서 :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함께 표기
- ② 성적증명서 :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1장에 표기
- ③ 졸업증명서 :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1장에 표기